

의정부지방법원 2017. 6. 22 선고 2017가단8531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]

전 문

원고주식회사 고도산업

피고A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7. 6. 22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포천시 B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4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가)부분 지상 무허가건물 시멘트블록조 스테트지붕 단층 83㎡를 철거하고, B, C, D 중 별지 도면 표시 5, 14, 13, 7, 8,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가), (나), (다), (라)부분 토지 205㎡를 인도하고,
나. 2016. 12. 9.부터 위 대지인도 완료일까지 월 517,67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적용법조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(무변론판결)

판사변민선

별지